[별지 제2호서식]<개정 1993.10.30, 1995.3.2, 1997.3.17> (앞 면)

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				처리 기간 15일
신청인	① 성 명 (법인명 및 대표자성명)		②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(전화번호 :)		
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		(운행형태 :)		
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				
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				
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				
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(법 제4조제3항 해당)				

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건설교통부장관
특 별 시 장
광역시장 귀하
도 지 사

수 수 료
기본14,000원 차량1대당 2,000원 추가

구비서류

1. 사업계획서(시행규칙 제12조 참조) 1부
2.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
3. 노선도(시행규칙 제11조 참조) 및 운행계통도 1부
4. 화물의 예정집배구역(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) 관계서류 1부
5. 기존법인 : 가.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
   나. 임원명부 1부
   다.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
6. 법인설립시 : 가. 정관(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) 1부
   나.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
   다.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
7.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
8.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

33331-22511민 210㎜×297㎜

'93.9.6. 승인 (신문용지 54g/㎡)

※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: 생략

⊙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5호(1994.11.19) 개정지시문

[뒷면 처리기관란중 "교통부의 여객과"를 "교통부의 지역교통과"로 한다]